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

| 지원목적

-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및 소비자 안전확보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행정사항

-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100% 지원)

구분	제 품	품 목 명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100%지원)	1 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한복, 신발류, 가방, 양말, 장갑, 이불 등
	2 가족제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3 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지원 사항	서울시 60%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

|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80% 지원)

구분	제 품	품 목 명
공급자 적합성 인 어린이제품 (80%지원)	4 아동용 섬유제품 (만3세 이하)	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
	5 아동용 가죽제품 (만3세 이하)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6 어린이용 장신구 (만3세 이하)	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섬유, 합성수지, 금속 등)
지원 사항	서울시 40%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80%지원)	7 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이하)	의류, 신발, 침구류, 신발류, 양발류,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기저귀커바,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등
	8 봉제인형(만3세 이하)	형깁인형, 곰인형 등
	지원 사항	서울시 80% 지원 * 안전확인 법정수수료 할인 불가

생활용품 표시사항

1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

1. 섬유 혼용률
 - 겉감 ()% / 안감 ()%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cm) : 가슴둘레 () / 허리둘레 () / 키 ()
6. 취급상 주의사항 :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 가족제품의 경우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치수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
9. 취급상 주의사항

3 접촉성 금속 장신구의 경우

1. 사용연령 : 14세 이상
2.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6. 제조국명
7. 사용상 주의사항(필요시)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4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 안감 ()%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사항)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 사용상 주의사항 :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9. 제품 사용연령



5 아동용 가죽제품의 경우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제조국명
6.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치수(권장 사항)
9. 취급상 주의사항
10. 제품 사용연령



6 어린이용 장신구의 경우

1. 품명
2. 모델명
3. 재질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
- (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8. 제조국명(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시)
9. 사용상 주의사항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NOP, DINP 또는 DIDP가 포함된 어린이용 장신구는 제품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11. 제품 사용연령



7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 안감 ()%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시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5. 치수(권장사항)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8. 사용상 주의사항 :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9. 제품 사용연령
- 36개월 미만



8 봉제인형의 경우

1. 모델명
2.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5. 주소 및 전화번호
6. 안전표시(주의 경고 등)
7. 1 사용연령
7. 2 크기 및 한계 체중(승용완구, 코스튬 등)
8. 제조국(국내 제조제품 생략 가능)
9. 사용설명서 :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NOP, DINP 또는 DIDP가 포함된 어린이용 장신구는 제품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